붙임 1 프로그램 상세내용

세부 프로그램	상세내용		
공통	○ 사업비 불인정 공통 항목 - VAT - 임차료,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, 청소비, 차량보험료, 경상피복비 -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- 자산성 물품 구입비,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- 단순 경비(출장비, 식대, 인건비, 공공요금 등) - 상품성·단발성(일회성 판매용)·판매용 제품 제작 비용 - 사업비 변경, 이월 등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- 참여기업의 역할이 불확실한 용역비(ex. 3자 위탁개발 등) - 단순 자금 지원, 단순 원자재 조달,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비 -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- 그 외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		
시제품 제작, 제품 고급화	○ 지원 내용 - 양산 이전의 성능 개선·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-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 및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- 기존 또는 신규 고객 대상 제품 공급을 위한 Sales용 샘플 제작 - 개발 제품의 수요기업 필드테스트를 위한 샘플 제작 ○ 사업비 불인정 항목 - 단순 완제품 양산, 양산형 금형 등 자산성 물품 제작·비용 - 단순 원재료 구입 비용		
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	 ○ 지원 내용 -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, 관납료, 수수료 지원 -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, 번역료, 관납료 지원 -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단독명의의,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단독명의의 출원만 인정 * 협약기간 내 출원 등을 완료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○ 사업비 불인정 항목 -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- 선정 전 이미 출원된 건 		

세부 프로그램	상세내용
	 ○ 지원 내용 - 수혜기업별 학·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1:1 기업 컨설팅 체계 구축 - 연구개발 분야 기술 기획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서 (연구개발계획서) 작성 방법 등 R&D관련 기획 활동 지원 -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애로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문비 지원
R&D 컨설팅, 기술자문	 ○ 유의사항 - 전문가 수당: 1회 최대 30만원 - 전문가를 지정해둔 경우, 전문가 프로필을 제출하여야 함 ★ 완료 후 상담일지(컨설팅일지, 사진 필수 첨부)와 해당 기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	 사업비 불인정 항목 컨설턴트 교통비, 식대 등 일상경비 지원과제와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문가 수당 R&D와 관련 없는 단순 상담(컨설팅) 비용
	 ○ 지원 내용 - 기업 외부 전문 기관(기업)을 활용한 시장조사 및 경쟁업체 조사 용역비용 지원 - 기업의 신규/기존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화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
시장 조사, 사업화전략/ 비즈니스 모델 개발	 ○ 유의사항 - 시장조사에 대한 실적이 있는 기관(기업)을 통한 조사용역을 인정 - 기업을 지정해둔 경우, 포트폴리오 등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* 시장 동향, 주요 바이어 조사, 주력품목 시장조사, 법률 및 관세 등 해당기업을 위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	○ 사업비 불인정 항목 - 시장 조사를 위한 교통비, 식대 등 일상경비 - 지원과제와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사 비용 - 해당기업과 관련 없는 단순 조사 비용

세부 프로그램	상세내용
제조공정 디지털화 및	○ 지원 내용 - 제조공정 디지털화(자동화, DB구축 등)를 위한 전환비용 지원 - 미래차 부품 시생산을 위한 시험라인 임차비용 지원
시험라인 운영지원	사업비 불인정 항목제조공정과 관계없는 SW 개발비용판매용, 생산용 제품 제작을 위한 라인 임차비용
부품 전환 생산설비 교체 지원 (설계/제작)	○ 지원 내용 - 기존 내연기관 부품 생산설비를 미래자 부품 생산설비로 변경을 위해 발생되는 설계비용, 부품 교체·제작 비용 등 지원 - 기존 내연기관 부품 생산설비를 미래자 부품 생산설비로 변경후 라인 등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배치 비용 지원
	○ 사업비 불인정 항목 - 생산설비(기계) 구입 비용

불의 2-1 제출서류 목록(기술주도형R&BD, 미래자동차)

구분		제출자료	비고
모이	1	지원신청서	서식1
	2	사업계획서	서식2
	3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3
	4	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서식4
	5	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	서식5
	6	사업자등록증	
	7	사업자등록증명원 / 법인등기부등본	대상여부 확인용
	8	최근 3년 재무제표 * 전년도 재무제표 미발행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	
	9	최근 3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* 년단위로 발급하여야 함(총 3부).	
	10	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	
	11	견적서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* 필요시 상세 견적서, 원가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음	
해당시	12	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	
	13	공장등록증	

월 22 제출서류 목록(스타 비즈니스 센터)

구분		제출자료	비고
모이	1	입주신청서	
	2	사업계획서	별첨1
	3	기업이력서	별첨2
	4	지원신청서	서식1
	5	사업계획서	서식2
	6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3
	7	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서식4
	8	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	서식5
해당시	9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	
	10	전년도 재무제표	
	11	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	

붙임 3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

-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.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.
 - 1.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
 - 2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
 - 3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 - 1.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·변조·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
 - 2.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
 - 3.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
 - 4.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
 -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
 - 4.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 - 5.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ㅇ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.
-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.

- o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.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.
 -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3-69호, 2023. 7. 17.)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 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 -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
 - 연구개발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
 -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 -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
 -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
 -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